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나65927 판결 [임대차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나659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소5195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 선고 2020. 9. 2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소5195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장 부분 외에 나머지 서류들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소송 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소장 부분, 소송안내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1. 9. 제1심법원에 답변서와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3. 2.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9. 3. 18.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3. 19. 송달간주된 사실, 그 후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19. 3. 21.자 준비서면 및 2019.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의 송달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제1심법원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4. 4.과 2019. 4. 25.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9. 6. 13.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판결의 정본 역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19. 7. 14.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16.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9. 8. 28.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소나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